

「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4. 12. 31(수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01. 13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5. 01. 19(월) 제208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기획감사실장 장하진)

- 평창이야기 발행 등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군민기자에 대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고 일반 소양, 기사 작성 능력을 배양하여 주기 위하여 향토지 등의 구독을 지원해 주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 개정안은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에 의하여 활동중인 군민기자 18명에 대하여 향토지 구독 지원으로,
- 군정홍보 활동에 따른 군민기자의 사기양양과 기사작성 능력배양 등 홍보환경에 능동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군민기자의 소양함양과 지역 내 소식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향토지 등의 구독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